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주 택 도 시 기 금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주택채권을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현행 5년으로 일괄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만기를 기획재정부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원활히 추진·운용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역활성화 사업 특례 금융보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
주택가격 대비 부채 비율이 임대보증 가입 기준을 초과함에도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서 상 계약금액을 허위로 작성하여 임대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보증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의 임대차 신고내역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전

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**이율은**”을 “**이율과 만기는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21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지역활성화사업특례금융보증: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4조의2에 따른 출자대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

제25조의2제2항제3호가목5) 중 “**거래에**”를 “**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**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)	제6조(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)
①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·공채 등의 금리와 기금의 수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,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	① ----- 이율과 만기는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.	<삭 제>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1조(보증의 종류와 보증료)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1조(보증의 종류와 보증료) ① ----- ----- -----.
1. ~ 9. (생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9의2. 지역활성화사업특례금융 보증: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4조의2에 따른 출자 대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

10. (생략) ② ~ ④ (생략) 제25조의2(자료제공의 요청) ① (생략) ② 국토교통부장관, 공사, 기금 채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2. (생략) 3.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가.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자료 1) ~ 4) (생략) 5)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동산등의 <u>거래</u>에 관한 자료 6) 7) (생략) 나. (생략)	10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25조의2(자료제공의 요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가. ----- - 1) ~ 4) (현행과 같음) 5) ----- ----- ---- <u>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</u>에 ----- 6) 7) (현행과 같음) 나. (현행과 같음)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344 (044) 201 - 3347